

# 2020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3분기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## 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 제3항

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□ 예산전용 내역 : 총 2건, 144,85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	전용액		전용후 예산액	
부서명	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예산현액	증	감		
총 계 (① + ②)						1,195,252	144,850	144,850	1,195,252
소계 (① 서울도시건축센터 스마트회의시스템 확대 구축)						1,037,000	94,850	94,850	1,037,000
도 시 계획과	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	도시발 전연구	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 단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757,000	-	94,850	662,150	
				자산및물품 취득비 (405-01)	280,000	94,850	-	374,850	
소계 (②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)						158,252	50,000	50,000	158,252
도 시 관리과	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	도시건 축공동 위원회 운영 등	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158,252	-	50,000	108,252	
				시설비 (401-01)	-	50,000	-	50,000	

## □ 전용사유

### ① 서울도시건축센터 스마트회의시스템 확대 구축

○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 추가구입을 위한 예산전용

-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구축
-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스마트회의시스템 구축 추가 물품구입 (책꽂이, 시민참관 책상, 의자 등 추가구입)

(단위 : 천원)

자산취득비	전용 전	전용 후	증감액	비고
합계	280,000	374,850	94,850	
화상회의시스템 구축	0	72,850	72,850	'20.12. 집행예정
스마트 회의시스템 구축 (IT시스템, 가구시스템)	280,000	302,000	22,000	'20.8.~'20.9. 집행완료

### ②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

○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시급한 전문 용역 추진 필요

- 중앙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('20.8.4)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고밀주거중심의 복합개발 제도 개선을 발표함에 따라,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필요

○ 기술용역 발주를 위해 편성목에 대한 예산 전용 추진

-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사업인 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”은 기술용역 발주를 위한 시설비가 미편성되어, 관련 예산 사용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 추진